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33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전재수・박선원・허 영

김재원 · 임오경 · 박지원

김정호 · 신영대 · 채현일

위성곤 · 김기표 · 이학영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(다자녀 가정)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 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, 공공요금·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,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4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의4제1항 중 "셋 이상의"를 "둘 이상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	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
① 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	①
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	
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	
의료급여의 수급자, 출산 또는	
입양으로 <u>셋 이상의</u> 자녀를 양	<u>둘 이상의</u>
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	
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	
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